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25.(금) 18:00 < 4.26.(토) 조간 > 배포 2025. 4. 25.(금) 1800

전기위원회, 출력제어 미이행 태양광 8개 발전사업자 과징금 부과

-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 연장 불허된 11개 발전사업 허가 취소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이종영)는 4월 25일(금) 제311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하여 태양광 출력제어 미이행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도 결정하였다.

* (공사계획인가기간) 사업허가를 받고 공사계획인가를 받아 착공하는 날까지의 기간
(준비기간) 사업허가를 받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

이에 앞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위반한 전라남도 지역 8개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3월 28일 제310차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전기위원회는 동 발전사업 허가권자인 전라남도에 이를 통보하였고, 이번 제311차 전기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징금 세부기준을 전라남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향후 전라남도는 이러한 세부기준에 따라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전기위원회는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이 만료한 27개 발전사업('24년 11월말 기준)에 대해 기간 연장 여부 심의 및 청문 절차 등을 거쳐 11개 발전사업(총 347MW 규모)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전기위원회는 2023년 8월에 연장기준을 강화하였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번 전기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허가 취소를 결정하였다.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접속 등 사업 추진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전기위원회에서는 2025년 중에 공사계획인가기간 등이 도래하는 약 230여개 발전사업의 허가 연장 여부도 심사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전기위원회 사무국	책임자	사무국장	이경훈 (044-203-4590)
		담당자	사무관	변재택 (044-203-4594)
			사무관	여송화 (044-203-459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출력제어 미이행 발전사업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과징금 부과 절차

①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이 신고접수,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사무국이 조사

②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심의·의결, 전기위원회에 송치

③ 전기위원회 심의·의결(3MW 이하의 발전사업자의 경우 시·도지사가 결정)

④ 과징금 사전 통보 및 소명 절차(2주간)

*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소명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 재심의

⑤ 과징금 통지서 송부

□ 과징금 산정 방식

① 출력제어 미이행 기간·횟수를 고려하여 이로부터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SMP, REC 금액 합산) 계산

② 동일 월내 출력제어 미이행 빈도*

* 1회 위반의 경우(2배), 2회 이상 위반의 경우(4배)

③ 최근 1년 이내 과징금 전례 있을 경우 50% 가중

과징금 산식* = ① × ② (2~4배) × ③ (1.5배)

* 만원 미만 버림, SMP, REC 환수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

※ 직전 3개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4%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

□ 근거법령

○ 전기사업법 제21조(금지행위),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제27조의2(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2조(과징금 산정방법), 제13조(과징금의 상한액 및 부과기준),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참고2 **공사계획인가기간 등 경과로 허가 취소된 발전사업**

연번	사업자	발전사업명	발전원	설비용량 (MW)	허가일	허가번호
1	영월그린에너지	영월그린에너지 연료전지	연료전지	99.4	'19.07.19.	2019-78
2	울산에코에너지	울산 에코에너지 연료전지	연료전지	19.8	'21.10.18.	2021-89
3	미래그린에너지	당진 미래그린 연료전지	연료전지	19.8	'19.10.30.	2019-119
4	대산연료전지	대산 연료전지	연료전지	60.7	'19.05.27.	2019-40
5	라온에너지	라온에너지 연료전지	연료전지	14	'21.05.31.	2021-48
6	디에스티	금산 에코밸리 연료전지	연료전지	39	'21.03.02.	2021-22
7	중흥에너지	중흥아산1호 연료전지	연료전지	20	'20.11.30.	2020-112
8	천안삼영그린에너지	천안 연료전지	연료전지	25	'16.06.13.	2016-79
9	유에이치에프	아산 UHF 그린1호 연료전지	연료전지	20	'20.11.30.	2020-13
10	유진바이오에너지	인천 바이오매스	바이오SRF	9.9	'16.03.02.	2016-19
11	아이에코에너지	인천식품단지 연료전지	연료전지	19.8	'18.03.29.	2018-14
합계				3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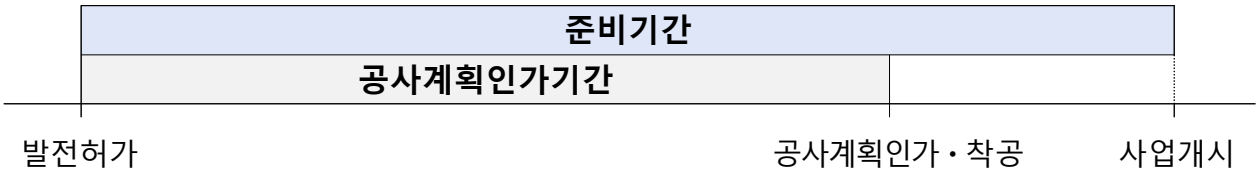
참고3 강화된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 연장기준 요약

□ 추진배경

○ '23.8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개정하여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 연장요건을 강화**

○ 이로써 지연사유 제출 시 기간을 연장하던 관행을 환경영향평가 완료 등 특정행위 완료 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

<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제도 개요 >



※ 공사계획인가기간 內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및 준비기간 內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허가 취소

□ 연장기준

※ 아래 연장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연장

공사계획인가기간·준비기간 연장기준	근 거
• **(공통)**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	고시 8조2항1호
•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환경영향평가(또는 유사한 절차) 완료 **(공통)** 개발행위 허가(또는 유사한 절차)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고시 8조2항2호
• **(공통)** 전력판매, 신재생에너지 REC 매매를 위한 장기계약 체결	고시 8조2항3호
• **(공통)** 천재·지변·화재·기타 재해로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고시 8조2항4호, 제300차 전기위원회 ('24.7.26.) 의결
• **(공통)**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	
•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사업자의 재무능력,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고, 부지의 소유권·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 **(공통)** 사업자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전력계통 접속에 지연이 발생하여 부득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 경우	
• **(공통)**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업자가 부득이 사업 추진을 못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